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
배 포 일	2020. 7. 6. / (총 3매)		담당부서	보건의료정책과
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	과 장	김 국 일	전 화	044-202-2420
	담 당 자	박 재 우		044-202-2402
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	위 원 장	김 록 권		02-793-4100
	팀 장	이 성 민		
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	위 원 장	김 종 수		02-2024-9135
	과 장	허 현 정		
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	위 원 장	김 경 호	02-2657-5030	
	과 장	서 정 민		

건강한 의료광고 우리 함께 만들어요

-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발간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*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·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'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(체크리스트)'를 제작·배포하였다.

*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: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 대한의사협회(의료광고심의위원회(위원장 김록권)), ② 대한치과의사협회(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(위원장 김종수)), 대한한의사협회(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(위원장 김경호))에서 설치·운영 중

-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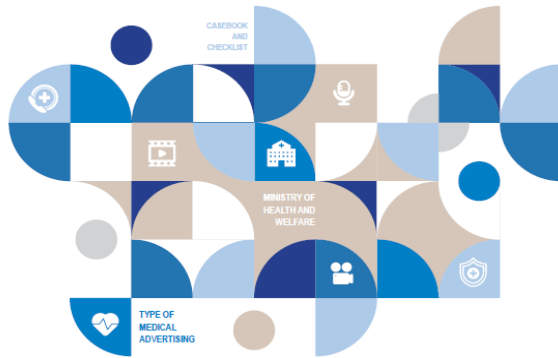
-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,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.
-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·대한치과의사협회·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하여 안내서(가이드북) 성격의 책자*를 발간하였다.
 - * 이 ‘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’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·개발을 기초로 마련
 -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,
 -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·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,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.
-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“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, 사후 적발 및 점검(모니터링)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,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.”라고 전했다.
-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“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,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.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.”라고 전했다.
-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(다운로드)할 수 있다.

* 보건복지부(<http://www.mohw.go.kr>), 대한의사협회(<http://www.admedical.org>), 대한치과의사협회(<http://www.dentalad.or.kr>), 대한한의사협회(<http://ad.akom.org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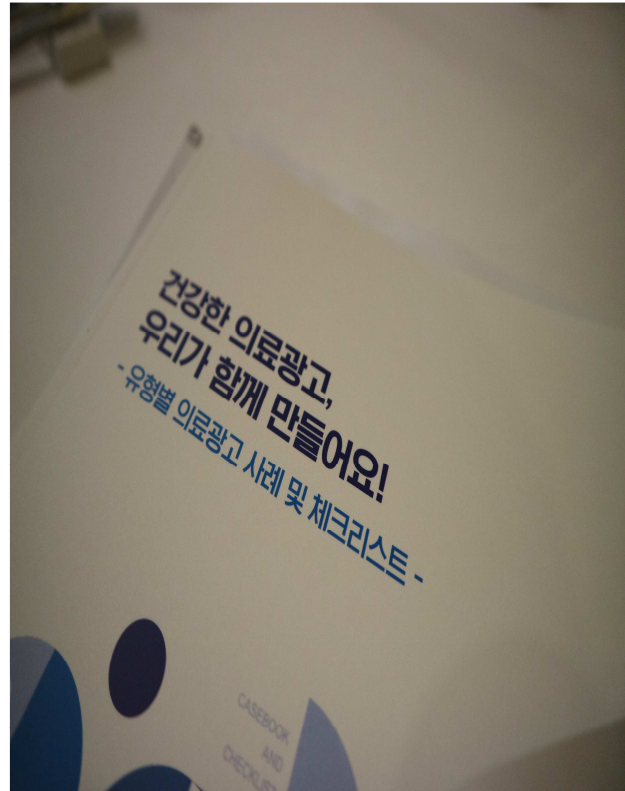
참고

가이드라인 표지 및 현장사진 등

건강한 의료광고,
우리가 함께 만들어요!
-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-



보건복지부 KFA 대한의사협회 KDA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원사협회



왼쪽부터 김종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,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, 김경호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, 김국일 보건 의료정책과장